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255호
- 나. 발의자 : 김혜영 의원(찬성자 41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기초예술은 상업예술이나 대중예술의 토대가 되는 핵심 기반 예술로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이에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다.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기초예술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전문기관 협력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기초예술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뜻의 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기초예술은 창작·연구·실험 활동을 통해 예술 전반의 질적 수준을 형성하는 기반적 영역에 해당함에도 현행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서는 기초예술을 독립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정책적 지원 대상과 범주가 모호하게 남아 있음.

이러한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인 지원의 형평성·일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코로나19 이후 예술인의 생계 불안정과 활동 기회 감소가 심화되었고, 특히 기초예술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여러 토론과 연구에서 지적되었음.
- 지난 3월 우리 의회가 개최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기초예술을 “한 사회 문화예술의 존립 기반”으로

규정하며, 창작 생태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한 바 있음.

또한 최근 예술 장르 간 융합과 기술 기반 예술의 등장 등 변화가 확대되면서 전통적 장르 중심의 분류만으로는 정책 대상을 설정하기 어려운 현실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환경 변화는 기초예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행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음.

- 정책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예술의 범위와 기초예술인 인정 기준을 조례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선도하고, 기초예술 지원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제정안은 기초예술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의 문화도시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다. 제정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총 7개조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

(시장의 책무) ▲ 제4조(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지원 사업) ▲ 제6조(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 제7조(전문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주요내용	세부설명
제1조 (목적)	조례 제정 목적 명시	기초예술 활성화와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 서울시 예술 발전 및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제2조 (정의)	용어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 등"의 정의를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
제3조 (시장의 책무)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 규정	시장이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4조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5년마다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며, 기존 예술인복지 기본계획과 연계 가능
제5조 (지원 사업)	기초예술 활성화 관련 사업 유형 열거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협력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초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 가능
제6조 (기초예술정책 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초예술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필요시 문화도시위원회가 기능 수행 가능
제7조 (전문기관과의 협력)	전문기관과의 협력 근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기초예술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2조는 예술인 등의 정의를 관련 상위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조는 시장이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안 제5조는 공간 지원, 교육, 연구, 교류 협력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기초예술 활성화의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할 기초예술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라.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동 제정안이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을 확인하고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기초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예술인 복지법」(이하 예술인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2개 법률은 각각 “문화예술”과 “예술 활동”의 뜻을 정의하고,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동 제정안의 핵심 용어인 “기초예술”의 정의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연구사례 및 사회통념상 개념을 근거로 유추할 필요가 있음.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 활동”이란 인상, 견문, 체험 등을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창의적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기획과 비평을 포함한다), 실연(연습과 훈련을 포함한다),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 한국법제연구원의 「문화예술진흥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연구」는 현행 문화예술 법령이 장르별 개별법 증가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술의 개념과 범주가 일관되게 정립되지 못한 점을 구조적 한계로 지적하며,

이로 인해 새로운 예술 형태나 융복합 예술을 포섭하지 못하고, 정책 간 충돌·중복이 발생하며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 개념의 재정립과 예술 범주화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는 아직 법령에 정의되지 않은 “기초예술”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정책 대상의 정당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절적 법체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기초예술의 뜻을 정의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와 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명확하게 합의되어 도출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다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연구 자료로 「왜 기초예술인가? – 기초예술정책을 위한 제언」(2007)는 “한 사회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예술로서 부가 가치 창출의 1차 예술행위에 속하는 모든 예술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2021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 “기초예술과 대중예술, 생활문화를 분리하는 기준은 유동적인 상태지만 대중들의 생각 속에서 기초 예술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교차하며, 보호, 육성이라는 정책적 필요를 위해 기초예술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언이 있었던 것을 고려할 때,

용어를 법정 개념화하기 위한 정의보다는 문화예술계의 인프라 구축 및 보호·육성을 위한 범주화 필요성에 따른 정의가 요구

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기초예술”에 대한 정의는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칸막이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문화예술계의 취약점을 살피는 도구로써 활용되어야 할 것임.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를 조례로써 정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가 아닌 경우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입법 공백인 법령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만으로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툴 여지는 없다고 판단됨.

- 한편, 사회통념상 개념으로서 기초예술의 뜻은 예술의 뿌리로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예술의 기본적·창의적 영역을 의미하며, 대중예술의 토대가 되는 예술 분야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따라서 사실상 현행 제도에서의 사용되는 개념과 중복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예술인 지원사업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지원대상의 최소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의 제정만으로 사업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가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법화에 대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됨.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인”이란 예술인 중 제3조의2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한 사람을 말한다.

(2)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을 위해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는,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원화하여 운영 중임.

- 동 조례안 또한 동일한 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이해되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지원 사업(안 제5조)

- 안 제5조는 각 호로써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및 각종 위탁 사업을 통해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역량 강화 교육, 연구·

조사 및 교류·협력 지원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음.

< 제정안 관련 서울문화재단 예술인 지원사업 >

구 분	사업명	주요내용
1. 예술인의 기초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지원	- 창작공간 운영 - 연극창작지원시설 운영	- 예술가 창작실 제공, 연습실·스튜디오 지원, 입주작가 프로그램 운영 등 창작활동 기반 제공 - 연극창작지원시설의 공간 운영 및 창작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작품 제작 환경 지원
2. 예술인의 기초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 시민 대상 예술교육 운영, 예술가 교육 참여 확대 및 신규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예술가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및 교육 기반 확대
3.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조사	- 문화지표 및 문화향유실태조사	- 장애예술인 창작 실태조사, 창작지원 체계 연구, 예술인 역량강화 지원. 장르별 창작 활동을 분석하여 맞춤형 정책 개발에 활용
4.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 서울문화예술포럼 - 서울국제예술포럼	- 각 분야 예술가, 문화기획자, 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 문화예술계 다양한 주제로 정례 포럼 개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 매력일자리 등 서울시 위탁사업	- 청년 예술인의 실무 경험 제공, 일자리 연계 - 재단 홍보·콘텐츠 제작, 예술 네트워크 강화 등 기초예술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확장 사업 포함

- 다만, 2년마다 실시 중인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을 일반시민, 즉 수요자 측면의 조사만 실시되고 있어 향후 동 조례안을 통해 기초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서울시가 실시해 온 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인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사업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예술 생태계의 조성 보다는 정량적 지표가 성과 평가의 기준이 돼 수익성이 떨어지는 예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임.
- 따라서 예술에 대한 협의의 개념으로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그동안 외면되었던 예술

공급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고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4)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안 제6조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기초예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위원회가 동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1.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 기존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따라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문화도시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초

예술은 해당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5조(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지역문화의 진흥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의 문화도시 구현, 문화예술진흥,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한편, 2018년 4월 설치된 문화도시위원회는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점차 그 활동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동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근간으로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도시위원회 활동실적 >

구 분	합 계	전체회의	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회의	비 고
1기 ('18.4.~'20.4.3.)	15회	6회	2회	5회(분과별 1회)	2회	
2기 ('20.4.~'22.4.3.)	5회	2회	3회	-	-	
3기 ('23.9.1.~'25.8.31.)	4회	2회	-	-	2회	기타 실무적 논의를 위해 실무회의 개최

마.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그동안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초예술은 창작·연구·실험을 통해 예술 전체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화예술 법령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정책 대상과 지원 범위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임.

이러한 법적 공백은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환경이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의 형평성과 일관성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기초예술을 별도로 인식하고 체계적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융복합 예술의 확산과 장르 간 경계 붕괴로 인해 기존 장르 중심 정책으로는 지원 대상 설정이 어렵게 된바, 기초예술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조례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을 통해 이미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 시 즉각적 정책 연계가 가능하며, 기초예술 분야에 특화된 정책 기반이 새롭게 마련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동시에 정책의 정당성·

일관성·효율성을 높이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겠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심형준(2180-8116)

의안번호
3255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혜영 의원(1인발의)	2025.10.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울시가 중장기적으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관련 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 ○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에 대해 규정 ○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10.20. 조례안 제안 		
부 서 검토 의견	원안가결(<input checked="" type="radio"/>)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례안은 기초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시 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관련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규정이 있어 특이사항 없음.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 임 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노은영(☎2133-2552)
			담당
			최종규(☎2133-2555)